

『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여비 조례」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「공무원 여비 규정(대통령령)」의 일부 조항이 개정('11. 2. 9.) 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 마련(안 제5조)
 - 단, 상한액의 85% 정액지급시 실비정산 면제

4. 참고사항

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제8조의2

5. 검토의견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「공무원 여비규정(대통령령)」의 일부 조항이 2011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,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국외 숙박비 단가 인상 및 실비정산에 따른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